

공사 입찰 안내 공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승강기 권상기·시스템 교체공사

【공고개요】

- 공 사 명: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승강기 권상기·시스템 교체공사
- 공사내용: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1대)
- 기초금액: 금67,068,000원(부가세 포함)
- 개찰일시: 2026. 7. 28.(화) 15:00
-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1.(화) 14:00 ~ 7. 28.(화) 14:00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승강기 권상기·시스템 교체공사
 -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다. 기초금액 : 금67,068,000원(추정가격 60,970,909원, 부가가치세 6,097,091원)
 -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제
 - 마.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2번길 16(재송동)
 -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계약 시 상호협의를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공사내용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1대)
 - ① 권상기·제어반 등 핵심 구동시스템 교체
 - ② 「승강기 안전관리법」 상 정밀안전검사 대상7대 안전장치(조속기, 비상정지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장문 잠금장치, 상 승과속방지장치 등)설치·보강
 - ③ 카 내부 의장(벽체·천장·도어 마감) 및 부대설비 교체를 포함하는 성능개선(모더니제이션)공사임.
- ※ 본 공사는 승강로, 레일, 카 프레임 등을 포함한 승강기 전체 교체 공사가 아니며, 상세 규격·물량은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에 따릅니다.
- ※ 시방서 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2.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번호 6201 /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고속엘리베이터 또는 중저속엘리베이터)】(업종코드: 5851 또는 5852)**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과 승강기유지
관리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기술인력 포함)를 개찰 이후 계약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사후판정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해당 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 증빙 등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이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
전에 현장 상황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 미확인 및 설계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의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약속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1(화) 14:00 ~ 2026. 7. 28.(화) 14:00

6. 개찰일시 : 2026. 7. 28.(화) 15:00(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입찰담당자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전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전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 참고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시 우리 기관이 교부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전적서 제출

가. 본 전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전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전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공사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 및 취소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 부금비 (1억이상만 해당)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대상액 × 3.11%)
2,304,887	332,690	439,577	43,716	0	1,488,904

※ 불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 하여야 함.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 라.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본 복지관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 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
가가치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
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및 준수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본 복지관으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본 복지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본 복지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은 청렴 계약이행대상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 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에 관한 서류 및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입찰담당자(051-784-8008)

2026. 7. 21.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4】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